

문서번호	안전관리처-2139
보존기간	준영구
결재일자	2016.04.21.
공개여부	공개
방침번호	이사장 방침 제 130호

★과장	팀장	안전관리처장	경영전략본부장	이사장
협 조	팀장			
	위원장			

안전보건관리규정 중 개정규정(안)

2016. 4



안전관리처

안전보건관리규정 중 개정규정(안)

1. 개정이유

산업안전보건법 및 동법시행령 등 관련법령의 개정된 내용을 규정에 반영하고, 공단의 안전보건 관리체계 개선 및 자율 재해 예방 활동을 촉진하여 산업재해 예방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규정상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근로자대표에 관하여 정의함(제3조)

-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의 대표자로 함.

나. 안전보건관리 담당부서 및 조직표를 변경함(제6조)

- 2015.1.1.자로 시행된 직제규정 및 직제규정시행내규에 따라 안전보건관리 담당부서를 총무처에서 안전관리처로 변경함.

다. 공단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변경함(제7조)

-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이사장으로 정함.

라. 산업보건의 고용에 관한 기준을 변경함(제11조 제1항)

- 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산업보건의) 및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 조치법 제28조(기업의자율고용)제1항 제1호에 따라 산업보건의 고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마. 안전·보건 정기교육 시간을 조정함(제19조 제1항)

- 직원에 대한 안전·보건 정기교육을 월 1시간 이상에서 매분기 3~6시간으로 조정함.

바. 소관부서 관리감독자 교육시간을 조정함(제20조 제1항)

- 소관부서의 관리감독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 시간을 월 2시간 이상에서 연간 16시간 이상으로 조정함.

사. 안전·보건관리자의 직무교육 시기 등을 규정함(제21조 제1항)

- 공단 관리책임자 및 안전·보건관리자가 해당 직위에 선임될 경우 신규 교육 및 보수교육에 대한 시기를 규정함.

아. 안전보건교육 실시결과 보고서 양식을 변경함(제23조 제1항)

- 관계규정에 부합되게 양식을 변경함.

자. 산업재해조사표 양식을 변경함(제38조 제6항)

- 관계규정에 부합되게 양식을 변경함.

차.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위촉 및 처우에 관하여 규정함(제45조)

- 근로자대표는 이사장의 동의를 얻은 사람으로 고용노동부에 명예 산업 안전감독관 위촉을 추천할 수 있으며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이 관계법령에서 정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받지 않도록 함.

3. 참고 사항

○ 제안근거

- 규정관리규정 제7조(입안) 및 제10조(절차) 2항
- 정관 공포·시행(기획조정실-7495호, 2015.12.22)
- 직제규정 공포·시행(기획조정실-6881호, 2014.12.31)

○ 절 차 : 이사장 결재 후 공포·시행

안전보건관리규정 중 개정규정(안)

안전보건관리규정을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한다.

제3조(용어의정의)의 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호. “근로자대표”라 함은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의 대표자를 말하고,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사람을 말하며, 이 경우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령에 의거하여 선출한다.”

제6조(안전보건관리 조직)의 “별표1”을 조문 변동 없이 “별표1”로 한다.

제7조(안전보건관리책임자) 제1항의 “이사장은 공단의 안전보건업무를 총괄 관리하기 위하여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하 “관리책임자”라 한다)를 두어야 한다.”를 “공단의 안전보건업무를 총괄 관리하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하 “관리책임자”라 한다)는 이사장으로 한다.”로 하며, 제2항의 “관리책임자는 별도의 임명 절차 없이 경영전략본부장이 수행하며 그 직무는”을 “관리책임자의 직무는”으로 한다.

제11조(산업보건의) 제1항의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산업보건의를 선임하여야 한다.”를 “근로자의 건강관리나 그 밖의 보건관리자의 업무를 지도하기 위하여 산업보건의를 두어야 한다.

다만,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보건의를 선임하지 아니할 수 있다.”로 한다.

제14조(위원회 운영) 제1항의 “노조위원장”을 “근로자대표”로 한다.

제16조(교육계획 수립) 제1항의 “매년 12월중에 다음 연도의”를 “매년 1월 중에”로 한다.

제19조(정기교육) 제1항의 “월간 1시간 이상”을 “매분기 3~6시간”으로 한다.

제20조(관리감독자 교육) 제1항의 “제19조의 정기교육과 별도로 매월 2시간 이상의 정기교육”을 “관계법령에 따라 연간 16시간 이상의 교육”으로 한다.

제21조(직무교육) 제1항의 “관계법령에 의거 선임 후 1년 이내에 당해 행정기관이 지정하는 직무교육기관에서 실시하는 신규교육을”을 “해당 직위에 선임(위촉의 경우 포함한다)된 후 3개월 이내에 직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신규교육을 받아야 하며, 신규교육 이수 후 매 2년 되는 날을 기준으로 전후 3개월 사이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안전·보건에 관한 보수교육을”로 한다.

제23조(교육관련서류 보존) 제1항의 “별지 제1호 서식”을 조문 변동 없이 “별지 제1호 서식”으로 한다.

제24조(안전보건관리계획 수립) 제1항의 “매년 12월중”을 “매년 1월중”으로, “다음 연도”를 “해당 연도”로 하며, “경영전략본부장”을 “관리책임자”로 한다.

제33조(건강진단) 제3항의 “검진기관으로부터 건강진단 결과표를 교부받아 직원에게 지체없이 통보하고 진단기관의 확인을 받은 건강진단결과표를 작성하여 관할 지방 노동관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를 “건강진단기관으로 하여금 관계법령에 따라 건강진단 결과를 직원 및 공단에게 통보하고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38조(사고조사 및 보고) 제6항의 “별표3”을 조문 변동 없이 “별표3”으로 하며, 제8항의 “안전보관관리”를 “안전보건관리”로, “관리책임자 및 이사장”을 “관리책임자”로 한다.

제45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5조(명예산업안전감독관)

- ① 근로자대표는 이사장의 동의를 얻은 사람으로 고용노동부에 명예 산업안전감독관(이하 “명예감독관”이라 한다) 위촉을 추천할 수 있다.
- ② 명예감독관은 관계법령에서 정한 업무를 수행하며, 이사장은 명예 감독관으로 정당한 활동을 한 것을 이유로 그 명예감독관에 대하여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부칙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 대비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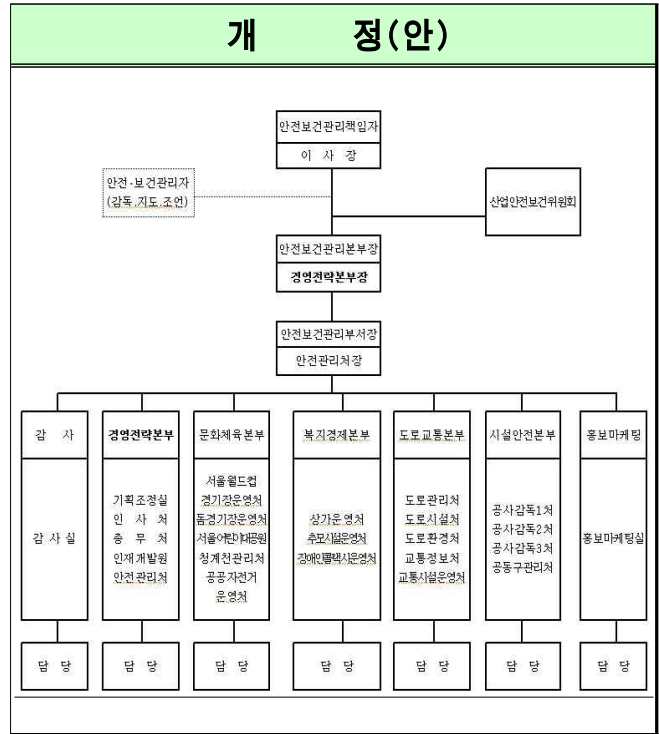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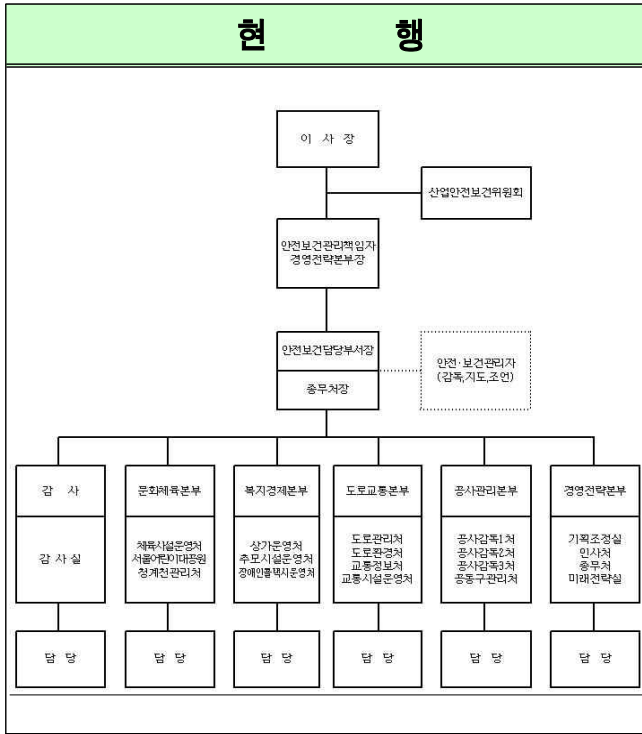
현행	개정(안)	비고
<p>제3조(용어의정의) 1호 ~ 6호 (생략) <신 설></p>	<p>제3조(용어의정의) 1호 ~ 6호 (현행과 같음) 7. “근로자대표”라 함은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의 대표자를 말하고,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사람을 말하며, 이 경우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령에 의거하여 선출한다.</p>	<p>관련법령 내용반영</p>
<p>제6조(안전보건관리조직) 공단의 안전보건관리 조직은 <u>별표1</u>과 같다.</p>	<p>제6조(안전보건관리조직) 공단의 안전보건관리 조직은 <u>별표1</u>과 같다.</p>	<p>조문변동 없이 “별표1”만 변경(별지 참조)</p>
<p>제7조(안전보건관리책임자) ①이사장은 공단의 안전보건업무를 총괄 관리하기 위하여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하 “관리책임자”라 한다)를 두어야 한다. ②제1항의 관리책임자는 별도의 임명 절차 없이 경영전략본부장이 수행하며 그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p>	<p>제7조(안전보건관리책임자) ①공단의 안전보건업무를 총괄 관리하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하 “관리책임자”라 한다)는 이사장으로 한다. ②제1항의 관리책임자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p>	<p>관련법령 내용반영</p>
<p>제11조(산업보건의) ①공단은 관계법령이 정하는바에 따라 필요한 산업보건의를 선임하여야한다. 다만, <u>이의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u> ② (생략)</p>	<p>제11조(산업보건의) ①공단은 근로자의 건강관리나 그 밖의 보건관리자의 업무를 지도하기 위하여 <u>산업보건의를 두어야 한다. 다만,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보건의를 선임하지 아니할 수 있다.</u> ② (현행과 같음)</p>	<p>관련법령 내용반영</p>

현행	개정(안)	비고
<p>제14조(위원회 운영)</p> <p>①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이사장, <u>노조위원장</u>을 공동위원장으로하고, 위원은 사용자측 위원(안전관리자 1명, 보건관리자 1명, 이사장이 임명하는 팀장급이상 직원)과 근로자측 위원 (명예산업안전감독관, <u>노조위원장</u>이 임명하는 직원) 각 10명 내외의 동수로 한다.</p> <p>② (생략)</p>	<p>제14조(위원회 운영)</p> <p>①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이사장, <u>근로자대표</u>를 공동위원장으로 하고, 위원은 사용자측위원(안전관리자1명, 보건관리자1명, 이사장이 임명하는 팀장급이상 직원)과 <u>근로자대표</u>가 임명하는 직원) 각 10명 내외의 동수로 한다.</p> <p>② (현행과 같음)</p>	<p>관련법령 내용반영</p>
<p>제16조(교육계획 수립)</p> <p>①안전보건 담당부서의 장은 <u>매년 12월 중에 다음 연도의</u> 연간교육계획을 작성하고 제24조에 규정한 안전보건관리계획에 포함하여야 한다.</p> <p>② (생략)</p>	<p>제16조(교육계획 수립)</p> <p>①안전보건 담당부서의 장은 <u>매년 1월중에</u> 연간교육계획을 작성하고 제24조에 규정한 안전보건관리계획에 포함하여야 한다.</p> <p>② (현행과 같음)</p>	<p>시기조정</p>
<p>제19조(정기교육)</p> <p>①정기교육은 소관부서에서 모든 소속 직원들에게 업무 수행상 필요한 제반사항을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것으로서 <u>월간 1시간이상</u>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소관부서의 실정에 따라 매일, 매주 또는 격주 단위로 분할하여 실시할 수 있다.</p> <p>② (생략)</p>	<p>제19조(정기교육)</p> <p>①정기교육은 소관부서에서 모든 소속 직원들에게 업무 수행상 필요한 제반사항을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것으로서 <u>매분기 3~6시간</u>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소관부서의 실정에 따라 매일, 매주 또는 격주 단위로 분할하여 실시할 수 있다.</p> <p>② (현행과 같음)</p>	<p>관련법령 내용반영</p>
<p>제20조(관리감독자 교육)</p> <p>①소관부서의 관리감독자는 <u>제19조의 정기교육과 별도로</u> 매월 2시간 이상의 정기교육을 받아야 한다.</p> <p>② (생략)</p>	<p>제20조(관리감독자 교육)</p> <p>①소관부서의 관리감독자는 <u>관계법령에 따라</u> 연간 16시간 이상의 교육을 받아야 한다.</p> <p>② (현행과 같음)</p>	<p>관련법령 내용반영</p>

현행	개정(안)	비고
<p>제21조(직무교육)</p> <p>①공단의 관리책임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는 관계법령에 의거 선임 후 1년 이내에 당해 행정기관이 지정하는 직무교육 기관에서 실시하는 신규교육을 받아야 한다.</p> <p>② (생략)</p>	<p>제21조(직무교육)</p> <p>①공단의 관리책임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는 <u>해당 직위에 선임(위촉의 경우 포함한다)된 후 3개월 이내에 직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신규교육을 받아야 하며, 신규교육 이수 후 매 2년 되는 날을 기준으로 전후 3개월 사이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안전·보건에 관한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u></p> <p>② (현행과 같음)</p>	<p>관련법령 내용반영</p>
<p>제23조(교육관계서류 보존)</p> <p>①교육실시 결과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거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p> <p>② (생략)</p>	<p>제23조(교육관계서류 보존)</p> <p>①교육실시 결과는 <u>별지 제1호 서식에 의거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u></p> <p>② (현행과 같음)</p>	<p>조문변동 없이 “별지1”만 변경(별지 참조)</p>
<p>제24조(안전보건관리계획 수립)</p> <p>①안전보건관리담당 부서장은 매년 12월 중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와 협의하여 다음 연도 안전보건관리 계획을 수립하여 경영전략본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p> <p>② (생략)</p>	<p>제24조(안전보건관리계획 수립)</p> <p>①안전보건관리 담당부서장은 <u>매년 1월 중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와 협의하여 해당 연도 안전보건관리 계획을 수립하여 관리책임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u></p> <p>② (현행과 같음)</p>	<p>시기조정</p>
<p>제33조(건강진단)</p> <p>① (생략)</p> <p>② (생략)</p> <p>③공단은 <u>검진기관으로부터 건강진단 결과표를 교부받아 직원에게 지체없이 통보하고 진단기관의 확인을 받은 건강진단결과표를 작성하여 관할 지방 노동관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u></p> <p>④ (생략)</p>	<p>제33조(건강진단)</p> <p>① (현행과 같음)</p> <p>② (현행과 같음)</p> <p>③공단은 <u>건강진단기관으로 하여금 관계 법령에 따라 건강진단 결과를 직원 및 공단에게 통보하고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하여야 한다.</u></p> <p>④ (현행과 같음)</p>	<p>관련법령 내용반영</p>

현행	개정(안)	비고
<p>제38조(사고조사 및 보고)</p> <p>① (생략)</p> <p>② (생략)</p> <p>③ (생략)</p> <p>④ (생략)</p> <p>⑤ (생략)</p> <p>⑥ 사고조사는 <u>산업재해조사표(별표3)</u>양식에 의거 조사하고 조사표 중 보고용은 관할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보고한다.</p> <p>⑦ (생략)</p> <p>⑧ 소관부서 관리감독자는 사고처리 결과를 <u>안전보관관리</u> 담당부서에 서면으로 통보하고 <u>안전보건관리</u> 담당부서장이 <u>관리</u> 책임자 및 이사장에게 보고한다.</p>	<p>제38조(사고조사 및 보고)</p> <p>① (현행과 같음)</p> <p>② (현행과 같음)</p> <p>③ (현행과 같음)</p> <p>④ (현행과 같음)</p> <p>⑤ (현행과 같음)</p> <p>⑥ 사고조사는 <u>산업재해조사표(별표3)</u>양식에 의거 조사하고 조사표 중 보고용은 관할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보고한다.</p> <p>⑦ (현행과 같음)</p> <p>⑧ 소관부서 관리감독자는 사고처리 결과를 <u>안전보건관리</u> 담당부서에 서면으로 통보하고 <u>안전보건관리</u> 담당부서장이 <u>관리</u> 책임자에게 보고한다.</p>	<p>조문변동 없이 “별표3”만 변경(별지 참조)</p>
<p><u>〈신설〉</u></p>	<p>제45조(명예산업안전감독관)</p> <p>① 근로자대표는 이사장의 동의를 얻은 사람으로 고용노동부에 <u>명예산업안전감독관</u> (이하 “<u>명예감독관</u>”이라 한다) 위촉을 추천할 수 있다.</p> <p>② <u>명예감독관</u>은 관계법령에서 정한 업무를 수행하며, 이사장은 <u>명예감독관</u>으로 정당한 활동을 한 것을 이유로 그 <u>명예감독관</u>에 대하여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된다.</p>	<p>관련법령 내용반영</p>
<p><u>〈신설〉</u></p>	<p>부칙</p> <p>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별표 1〉(제6조 관련) 안전보건관리 조직표



〈별지 제1호 서식〉(제23조 제1항 관련) 안전보건교육 실시 결과 보고서

현행			
안전보건교육 실시 결과 보고서			
사업소명	일자		년 월 일
교육 구분	1. 신규채용자 교육 ()	2. 작업내용변경시교육 ()	
	3. 안전보건특별교육 ()	4. 정기 교육 ()	
교육 구분	5. 관리감독자교육 ()	6. 기타 ()	
	구분	계	남 여 기타 특이사항
교육 인원	교육대상 근로자수		
	교육 실시 근로자수		
	교육미 실시 근로자수		
교육 내용	과목 또는 사항	교육방법	교육내용의 개요
			교육시간
교육장사 및 장소	직위(직책)	성명	교육장소
			비고

개정(안)			
안전보건교육 실시 결과 보고서			
부서명	일자		
교육 구분	1. 신규채용자 교육 ()	2. 작업내용변경시교육 ()	
	3. 안전보건특별교육 ()	4. 정기 교육 ()	
교육 인원	5. 관리감독자교육 ()	6. 기타 ()	
	구분	계	남 여 기타 특이사항
교육 내용	교육대상 근로자수		
	교육 실시 근로자수		
	교육미 실시 근로자수		
교육 내용	과목 또는 사항	교육방법	교육내용의 개요
			교육시간
교육장사 및 장소	직위(직책)	성명	교육장소 및 방법
			비고

※ 교육자 서명부 및 사진대지 첨부

〈별표 3〉(제38조 제6항 관련) 산업재해조사표

현		행	
산업재해조사표			
(다음 각 항목에 기입 또는 해당사항의 번호에 O표하고, 해당 '문자'와 '기호'를 통틀어 O표 해주십시오.)			
사업장명	주소	업종	근로자수
재해지점명	주민등록번호	년 월 일 요일 시 분	계속일자
담당직종	직책	1. 국장 2. 과장 3. 과장 4. 과장대우 5. 대우이성	동시계재유무(기수)
안전관리직 선임여부	1. 유 2. 무	보안관리직 선임여부	1. 유 2. 무
계재구분	1. 직장내사고 2. 관할현장사고 3. 교통사고 4. 화재사고 5. 직업병(진폐증제외) 6. 전계중 7. 낙중중 등 기타 개인경험		
재 해 발 생 기 요			
유사피해인원	직업내용 및 과정	상해부위	상해종류
1. 총력 2. 2.3급 3. 4명 이상	1. 기계장치, 설비의 작동 2. 기계장치, 설비의 보수 3. 원자재 및 용질의 취급 4. 정전 및 화상피해 5. 인력·포동병사 6. 전차 7. 운송수단, 보수·수리 8. 운송장비의 조작·승선 9. 시운·시험·판매업무 10. 업무수행중이 아닌 경우	1. 두부 2. 손 3. 눈 4. 목 5. 어깨 6. 팔 7. 손 8. 손가락 9. 종 10. 허부 11. 흉부 12. 다리	1. 물상 2. 중상 3. 중상 4. 화상 5. 타박상 6. 타박상 7. 타박상 8. 타박상 9. 타박상 10. 타박상 11. 타박상 12. 타박상 13. 타박상 14. 타박상 15. 타박상 16. 기타
발생장태			
1. 총력 2. 전도 3. 충돌 4. 낙하 5. 충격·도파 6. 협박 7. 강간 8. 폭발 9. 괴멸 10. 화재 11. 도둑행위 12. 이상행동질책 13. 유해물질유출			
본 의	기	인	상
(1) 일반돌발기재 (2) 전 설 계 (3) 기계장치기재 (4) 운 보 계 (5) 운 보 계 (6) 운 보 계 (7) 운 보 계 (8) 운 보 계 (9) 운 보 계 (10) 전 조 설 비 (11) 조 조 설 비 (12) 전 기 설 비 (13) 인력기재 및 용구 (14) 기판·전차수리 (15) 유 체·위 탐 (16) 계 조 (17) 객 계 (18) 산 업 조 (19) 전 경 (20) 기 의 (21) 기인물류유출유해	1. 화상 2. 중상 3. 전계중 4. 전계중 5. 전계중 6. 전계중 7. 전계중 8. 전계중 9. 전계중 10. 전계중 11. 전계중 12. 전계중 13. 전계중 14. 전계중 15. 전계중 16. 전계중 17. 전계중 18. 전계중 19. 전계중 20. 전계중 21. 전계중 22. 전계중 23. 전계중 24. 전계중 25. 전계중 26. 전계중 27. 전계중 28. 전계중 29. 전계중 30. 전계중 31. 전계중 32. 전계중 33. 전계중 34. 전계중 35. 전계중 36. 전계중 37. 전계중 38. 전계중 39. 전계중 40. 전계중 41. 전계중 42. 전계중 43. 전계중 44. 전계중 45. 전계중 46. 전계중 47. 전계중 48. 전계중 49. 전계중 50. 전계중 51. 전계중 52. 전계중 53. 전계중 54. 전계중 55. 전계중 56. 전계중 57. 전계중 58. 전계중 59. 전계중 60. 전계중 61. 전계중 62. 전계중 63. 전계중 64. 전계중 65. 전계중 66. 전계중 67. 전계중 68. 전계중 69. 전계중 70. 전계중 71. 전계중 72. 전계중 73. 전계중 74. 전계중 75. 전계중 76. 전계중 77. 전계중 78. 전계중 79. 전계중 80. 전계중 81. 전계중 82. 전계중 83. 전계중 84. 전계중 85. 전계중 86. 전계중 87. 전계중 88. 전계중 89. 전계중 90. 전계중 91. 전계중 92. 전계중 93. 전계중 94. 전계중 95. 전계중 96. 전계중 97. 전계중 98. 전계중 99. 전계중 100. 전계중	1. 타박상 2. 타박상 3. 타박상 4. 타박상 5. 타박상 6. 타박상 7. 타박상 8. 타박상 9. 타박상 10. 타박상 11. 타박상 12. 타박상 13. 타박상 14. 타박상 15. 타박상 16. 타박상 17. 타박상 18. 타박상 19. 타박상 20. 타박상 21. 타박상 22. 타박상 23. 타박상 24. 타박상 25. 타박상 26. 타박상 27. 타박상 28. 타박상 29. 타박상 30. 타박상 31. 타박상 32. 타박상 33. 타박상 34. 타박상 35. 타박상 36. 타박상 37. 타박상 38. 타박상 39. 타박상 40. 타박상 41. 타박상 42. 타박상 43. 타박상 44. 타박상 45. 타박상 46. 타박상 47. 타박상 48. 타박상 49. 타박상 50. 타박상 51. 타박상 52. 타박상 53. 타박상 54. 타박상 55. 타박상 56. 타박상 57. 타박상 58. 타박상 59. 타박상 60. 타박상 61. 타박상 62. 타박상 63. 타박상 64. 타박상 65. 타박상 66. 타박상 67. 타박상 68. 타박상 69. 타박상 70. 타박상 71. 타박상 72. 타박상 73. 타박상 74. 타박상 75. 타박상 76. 타박상 77. 타박상 78. 타박상 79. 타박상 80. 타박상 81. 타박상 82. 타박상 83. 타박상 84. 타박상 85. 타박상 86. 타박상 87. 타박상 88. 타박상 89. 타박상 90. 타박상 91. 타박상 92. 타박상 93. 타박상 94. 타박상 95. 타박상 96. 타박상 97. 타박상 98. 타박상 99. 타박상 100. 타박상	1. 타박상 2. 타박상 3. 타박상 4. 타박상 5. 타박상 6. 타박상 7. 타박상 8. 타박상 9. 타박상 10. 타박상 11. 타박상 12. 타박상 13. 타박상 14. 타박상 15. 타박상 16. 타박상 17. 타박상 18. 타박상 19. 타박상 20. 타박상 21. 타박상 22. 타박상 23. 타박상 24. 타박상 25. 타박상 26. 타박상 27. 타박상 28. 타박상 29. 타박상 30. 타박상 31. 타박상 32. 타박상 33. 타박상 34. 타박상 35. 타박상 36. 타박상 37. 타박상 38. 타박상 39. 타박상 40. 타박상 41. 타박상 42. 타박상 43. 타박상 44. 타박상 45. 타박상 46. 타박상 47. 타박상 48. 타박상 49. 타박상 50. 타박상 51. 타박상 52. 타박상 53. 타박상 54. 타박상 55. 타박상 56. 타박상 57. 타박상 58. 타박상 59. 타박상 60. 타박상 61. 타박상 62. 타박상 63. 타박상 64. 타박상 65. 타박상 66. 타박상 67. 타박상 68. 타박상 69. 타박상 70. 타박상 71. 타박상 72. 타박상 73. 타박상 74. 타박상 75. 타박상 76. 타박상 77. 타박상 78. 타박상 79. 타박상 80. 타박상 81. 타박상 82. 타박상 83. 타박상 84. 타박상 85. 타박상 86. 타박상 87. 타박상 88. 타박상 89. 타박상 90. 타박상 91. 타박상 92. 타박상 93. 타박상 94. 타박상 95. 타박상 96. 타박상 97. 타박상 98. 타박상 99. 타박상 100. 타박상
해 정시상이 있거나 기타 사실인 경우 구제권 행사			
계재발생 상황	원인 : () 확인근로감독관 () 안전실업확인 ()		
작성지	20 년 월 일		
O O 기행노동청(사무소)에 귀하			

개		정(안)	
산업재해 조사표			
※ 재해의 발생 요인을 알고 이해의 각 항목에 적거나 해당사항의 [] 안에 [✓] 표기를 합니다. (일부)			
I. 사업장 정보	①상해관리번호 (사업개시번호)	사업장등록번호	
	②사업장명	③근로자 수	
	④업종	소재지	(-)
	⑤재해자가 사내 유급인 소 속인 경우(간접직 제외)	⑥외도금인 사업장명 사업장 소재지번호 (사업개시번호)	⑦재해자가 과 근로자인 경 우 사업장 소재지번호 (사업개시번호)
건강안전 기재	⑧원유급 사업장명 ⑨원유급 사업장 소재지 번호(사업개시번호)	⑩공사현장 명	
	⑪공사종류	⑫경 정 륜	⑬공사금액 %
※ 이력 사항은 기재사항과 일치 작성하지 않은 기재로 기재하지 않거나 불일치 경우 별도 서신에 추가로 적습니다.			
II. 재해 정보	성 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 등록번호)	성별 [] 남 [] 여
	국 령	[]내국인 []외국인 [국적:]	⑭직 업
	입사일	년 월 일	⑮같은 종류업무 근무기간
	⑯포용형태	[]상용 []임용 []일용 []유급가족종사자 []계약일자 []그 밖의 사항 []	년 월
	⑰근우형태	[]정상 []교대 []교대 []교대 []시간제 []그 밖의 사항 []	
	⑱상해종류(일명명)	⑳상해부위 (일명부위)	⑳휴업대상 일수 사망 여부 [] 사망
III. 재해발생 요인 및 원인	발생장태	[]년 []월 []일 []시 []분	
	⑳재해발생 개 요	어디서 누가 무엇을 어떻게 왜	
	㉑재해발생 원인		
IV. 재발방지 요인			
작성일	년 월 일	작성자 성명	작성자 전화번호 (서명 또는 인)
		사업주 근로자대표(재해자)	(서명 또는 인)
고용노동부 (지)청장 귀하			
재해 분류자 기입란 (사업장에서는 적지 않습니다)		발생형태 작업지역, 품명	기인물 직업내용
		□□□ □□□ □□□ □□□	□□□ □□□ □□□ □□□
210mm×297mm(태입지) 80g/㎡(재활용종)			